

## 2021년 4분기 희망퇴직 시행

- 시행 근거: 2018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 이행(2018. 5.25)
  - 신청 대상: 6개월 이상 정년 잔여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
    - '2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도래예정자 ('64.12월생 ~ '65.2월생)
    -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
      -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      -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
- ※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### □ 주요 일정(안)

구분	일정	내용
공고 신청접수	12.2(목)~12.9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행문서 발송 및 전사 공지</li> <li>• 접수방법: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공상/장애는 증명서류* 및 신청사유 제출必</li> </ul> </li> <li>* 증명서류: 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or 장애인등록증 or 병원급 진단서</li> </ul>
인사위원회 심의/확정	12.10(금)~12.16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부서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발자 확정</u> (단, <u>공상/장애</u>에 대해서는 <u>중앙인사위원회 시행</u>)</li> <li>- 공상/장애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심의</li> </ul>
업무 인수인계	12.17(금)~12.23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발자 업무 인수인계 시행</li> <li>• 퇴직서류 징구</li> </ul>
퇴직발령	2022.1.1자	

※ 퇴직안내 위주의 전사 워크숍(1일)은 '코로나19' 사태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

※ 전직지원 교육은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후 시행(희망자 限)

## [참조 #1] 희망퇴직자 처우

구분	내용
희망 퇴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상기준: <b>월기본급* × 산정 월 수 × 지급률</b>                * 보수규정 제42조의 피크임금 기준의 월 기본급 적용             </li> <li>▶ 산정 월 수 (최대 45개월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개월</li> <li>-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 (최대 45개월)</li> </ul> </li> <li>▶ 지급률(%): <math>100 + [55 - \{(20 / 45) \times \text{산정 월 수}\}]</math></li> </ul>
비금전적 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사선물: 공로패, 여행상품권(150만원), 명예사원증</li> <li>• 복지지원: 유선통신비 보조(1년간 최대 월 3만원), 동우회비 지원(22만원)</li> </ul>